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5. . . (제 회)	

중 소 기 업 인 력 지 원 특 별 법 시 행 령
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오영주 (중소벤처기업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5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중소기업의 원활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인력 및 인식개선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, 실태조사 및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내용으로 「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」이 개정(법률 제20707호, 2025. 1. 21. 공포, 2025. 7. 22. 시행)됨에 따라, 중소기업 인력 및 인식개선 실태조사 및 결과 공표의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중소기업 실태조사와 통합 실시 근거 명확화(안 제3조의2 제1항)

- 1) 중소기업 인력 및 인식개선 실태조사를 중소기업 실태조사 등과 통합·실시할 수 있도록 한 근거 추가

나. 중소기업 인력 및 인식개선 실태조사 방법 구체화(안 제3조의2 제2항)

- 1)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또는 서면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함
- 2)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,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

다. 중소기업 인력 및 인식개선 실태조사 공표 방법 명확화(안 제3조의2 제3항)

- 1) 실태조사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
하도록 함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: 추진 예정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

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조의2(실태조사 및 결과 공표의 방법 등) ① 법 제7조제5항 및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인력 및 인식개선에 관한 실태조사를 중소기업 실태조사 등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②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또는 서면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,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.

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해야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3조의2(실태조사 및 결과 공표의 방법 등) ① 법 제7조제5항 및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인력 및 인식개선에 관한 실태조사를 중소기업 실태조사 등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.</u> <u>②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또는 서면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,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.</u> <u>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해야 한다.</u>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4 - 7442